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1. . . (제 회)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재무과장
제출 연월일	. . .

법무담당관 심사필

#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11. 8 . .  
제출자 : 고령군수

## 1. 의결주문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으로 외국인이 국내장애인과 거주하면서 자동차의 공동 등록시 감면대상 동거가족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감면 자동차 대체취득 기일을 연장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외국인이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과 혼인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대상에 포함.
- 장애인 감면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일시적 2차량이 된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이 촉박하여 처분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 4. 자치법규안 : 붙임과 같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취 :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

[경상북도 세정과-8683(2011.5.30)]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없음

라. 기타참고사항 : 없음

# 고령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주민등록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으로 하고, “30일”을 “60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 중 일시적 2차량 보유기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b>30일</b>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 -----</p> <p style="text-align: center;"><b>60일</b></p>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무과 부과담당	
연 락 처	(054) 950 - 6121